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83
----------	-------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김성원 · 김승수 · 김용판
박대수 · 이인선 · 이종성
이헌승 · 최영희 · 하영제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사례가 만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관급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6항).

이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안 제86조의4제1항),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8조의2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한다.

제68조의3제6항 중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86조의4제1항 본문 중 “3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제9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9조제3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금대금의 직접 지급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대금 대여대금 지급보증 준수여부 확인의 적용례)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 ----- ----- -----지급하여야 한다.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 ----- -----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⑤ (생략)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
-----10년
간-----

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 2. (생략)

[illegible]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과태료)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
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 -----

-----.

1. ~ 3의2. (현행과 같음)

